

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1.04.20.

개정 : 2011.11.22.

개정 : 2021.03.01.

개정 : 2021.12.0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교수, 직원, 학생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교직원등”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, 장려와 실시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2조(적용범위)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 등)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2. “발명자”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“외부발명자”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4. “자유발명” 또는 “개인발명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5. “특허”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6. “Know How”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7. “실시보상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Know-How 등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실시보상함을 말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- 제4조(권리의 승계) ①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 산학협력단” 이라 한다)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. <개정 2011. 11. 22.>
- ② 외부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외부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.
- ③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장 신고 및 출원

제5조(발명의 신고) ①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발명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양도증(별지 제2호 서식)
3. 발명의 내용 설명서(명세서)

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전담부서로서의 의견을 첨부한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.

제6조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총장은 제4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7조(권리의 양도)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지 제1호의 서식인 발명신고서와 별지 제2호의 양도증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, 산학협력단은 그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8조(출원) 산학협력단장은 제7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(법인)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출원 등의 제한)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

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10조(특허권의 승계)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특허출원비용) 산학협력단이 제6조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전액 부담한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3장 보 상

제12조(실시보상금의 처리) ① 산학협력단은 교직원등이 연구활동(정부주도의 연구과제와 정부 및 산업체의 외부수탁과제 포함)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,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-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관련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 이하 일 경우 : 대학교 50, 소속부서 10, 발명자 40의 비율로 배분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2.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대학교(소속부서 포함) 2/3, 발명자(들) 1/3의 비율로 배분한다. 다만, 소속부서로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①의2 제1항의 경우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른다.

제13조(부서별 기술이전 관련 담당교수 운용) ① 각 부서별 기술이전 관련 담당교수를 운용할 수 있으며, 해당교수는 소속부서의 연구활동, 보유기술의 소개 및 홍보, 외부의 기술적 자문에 있어서 창구역할을 담당한다.

② 기타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해외특허출원 지원금에 대한 보상금의 처리) 산학협력단(법인)의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.

제15조(발명자의 지분)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룰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3. 01.>

제16조(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금)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21. 03. 01.>

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산학협력단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3. 01.>

제17조(보상금의 불반환)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(모인)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8조(자유발명의 승계) ① 산학협력단은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제1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9조(발명자의 의무)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심사,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.

제20조(비밀의 유지)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특허권의 권리존속 여부)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 및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차부터 특허권의 유지, 양도, 포기를

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3. 01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시행시에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등의 개별관리중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당사자의 관리승계 의뢰가 있을 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양 도 증			
발명의 명 칭			
출원번호			
양 도 인	성 명	①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①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①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①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①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양 수 인	성 명	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	
	주 소	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	
<p>위 발명(지식재산권)을 직무발명규정및실시보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			